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정치운동 허용,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17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류 승 우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3

1.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정치 운동 허용, 단결권 및 단체교체권 보장 ····· 3

2.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금지된 쟁위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 11

※ 참고자료

1.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 13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박해철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4. 7. 2.

3. 회 부 일: 2024. 7. 3.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이 출자한 기타공공기관으로 당해 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군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인 신분임.

따라서 국방기술품질원 소속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헌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영위해야 할 것이나, 현행법 제60조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정치적 행위 및 정치 운동을 금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무원 의제(擬制)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어 온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기본권을 회복하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3항과, 동일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2항의 헌법 가치와 국방부문 산업평화의 중요성을 존중하여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0조 및 제62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정치 운동 허용, 단결권 및 단체교체권 보장

□ 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에 대하여 정치 운동을 허용하고 노동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및 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① (생략) ②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단서 신설> <신 설>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규정을----------. 다만,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불구하고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행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에 대해서는 「방위사업법」 제60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1] 준용되어 임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7장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제66조[2]가 있는데, 동 조항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운동과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등 노동운동을 제한하고 있음.[3]

이에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면서도 「방위사업법」에 따라 정치운동,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1)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제55조 선서, 제56조 성실 의무, 제56조 복종의 의무,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제59조의2 종교중립의 의무,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 청렴의 의무, 제62조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제67조 위임 규정(관련규정 참고자료 첨부)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 ·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한 노동운동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근로3권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근로삼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 및 노동법적 개념으로서의 근로삼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2003도2960).

□ 그러나,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4]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은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노동3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 준용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받게 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제66조의 적용을 제외하여 원칙적으로 정치운동과 노동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먼저, 개정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이와 같이 동법에 대한 준용 규정을 삭제하게 되면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은 동법 대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5]을 적용받게 되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

---

4)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 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준용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정치운동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개정안 제60조제2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현재 일반적인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6]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7]이 적용되지 않고, 그 대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조가 적용되어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8]

---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국가공무원법」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현행법상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노동3권은 공무원, 방산업체 및 다른 출연기관 등의 직원에 비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정치 운동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국민의 참정권과 노동권을 회복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정치 운동 허용 및 노동3권 인정에 관한 유사기관 직원 비교]

구 분 (신분)	공무원	국방기술품질원 (민간인)	방산업체 (민간인)	과학기술출연연 (민간인)
정치운동	×	×	○	○
단결권	○	×	○	○
단체교섭권	○	×	○	○
단체행동권 (쟁의행위)	×	×	×	○
근거 법률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11조	「방위사업법」 제60조제2항	「노동조합법」 제41조제2항	「노동조합법」 제2조

□ 또한, 개정안 제60조제3항은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불구하고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2.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 교정・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방기술품질원는 국방과학기술의 정보관리 및 군수품의 품질관리 등 국방무기체계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쟁의행위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되는 경우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려는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같은 취지에서 「헌법」 제33조제3항[9]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2항[10]에서도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 성능검사, 열처리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다만, 위와 같은 개정안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성격 및 무기개발 관련 업무의 특성, 유사 규정(「국방

---

9) **「헌법」 제33조**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0조(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범위) 법 제41조제2항에서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과학연구소법」 제1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경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해소 방안 등 다음의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국방기술품질원의 기관 및 업무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방기술품질원은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 등의 업무와 군수품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11]하고 있고, 동 업무는 무기체계 개발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이나 일반 연구기관 등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현행을 유지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이 아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일정 범위에서 준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12]

□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받게 되어 동법 제29조[13]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11) **「방위사업법」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①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

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현행법처럼 준용하여도 「공무원노조법」이 함께 준용되기 때문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국방기술품질원은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이나 예산에서 규율되는 경우에는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참고하여 법령 등의 내용이 단체협약에 우선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14]

□ 한편, 국방기술품질원과 기관의 성격 및 업무의 특성이 유사한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15]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리가 진행 중[16]이므로 그 심리 경과와 결정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①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공무원노조법」은 제10조에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15)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다만,「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제7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6) 헌법재판소 2023. 5. 19. 접수 2023헌가16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 위헌제청

□ 개정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국가안보 관련 업무의 특성, 단결권 등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 가입 대상 설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반면, 국방기술품질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직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금지된 쟁위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 개정안은 안 제60조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에 대하여 노동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62조(벌칙) ①·② (생 략) <신 설> ③ ~ ⑥ (생 략)	제62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유사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다른 법률의 처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금지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17]와 공무원이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18]에도 개정안과 동일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정안의 법정형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12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벌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참고자료

1.「국가공무원법」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제7장 복무

제55조(선서)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성실 의무)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직장 이탈 금지)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제61조(청렴의 의무)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7조(위임 규정)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